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어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어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명 “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어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어관한조례”로 한다.
- 제1조 중 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”을 “환경분쟁조정법”으로, “제10조 제2항, 제47조 및 제48조 제2항”을 “제15조 제2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”으로,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- 제2조 중 임기는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, 제4항 제5항의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- 제3조 중 “제47조”를 “제6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”로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, 제1항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- 제4조 중 “제48조 제2항”을 “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”으로, “지방환경위원회”를 “지방조정위원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